



-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자치구·시·군의 지방의회(이하"자치구 시·군의회"라 한다)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·면·동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행정 동마다 1인으로 한대로 하여 고성군의회 의원 총수는 14명으로 조정되었음.
- 이와관련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의 상임위원 정수의 조정이 불가피하며
- 의회운영위원회 6명, 총무위원회 7명,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별 중요성의 비중으로 보아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1명을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